정책연구보고 P135 | 2010. 12.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박 문 호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장~제4장 집필
박 문 호 연 구 위 원 제3장 부분 집필

머 리 말

최근 들어 농촌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마을의 영농조직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한 시설 지원이 많았으나, 요즘은 마을 공동체 단위로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원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에서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며 젊은 인력과 인재를 확보하여 건실한 농촌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마을공동사업 조직의 법인화란 마을을 하나의 경영체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농업경영과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농업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몇 개 마을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마을 단위 영농조합의 경험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모델이 되어 전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사업 조직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서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마을공동사업법인은 기존의 농업법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다양한 마을공동사업 조직을 농업법인 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와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가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 이 연구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사업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서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마을공동사업체는 기존의 농업경영체 성격의 농업법인과는 다르므로,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체를 농업법인 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음.

○ 마을공동사업체는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힙입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마을 단위로 지원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배경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5월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응용한 조직체 형태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 최근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도입한 활동을 의미함.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마을공동사업체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였음. 사례 조사는 마을공동사업의 형태를 도농

교류형, 지역개발형, 공동영농사업형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였음.

○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에서 2010년 10월에 조사한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공사례 220개소 중에서 마을공동사업체는 120개소이며, 이들의 조직 형태를 보면 새마을회나 마을영농회와 같은 임의조직이 61개소(1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농조합법인 53개소(44.2%), 민간단체 기타 5개소(4.2%), 농업회사법인 1개소(0.8%) 등으로 파악됨.

○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마을공동사업체의 특징을 보면, 정부 지원을 계기로 마을 공동의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리더가 존재하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임.

○ 마을공동사업체는 마을의 일부 농업인이 아니라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체이므로 사전에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출자자 및 참여자에 대한 이익 배분, 공동활동의 비용 부담, 공동시설의 소유권 등을 정관 및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 형태는 영리 목적의 회사법인보다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합법인이 바람직하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로서 마을공동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함. 다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성격이므로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체, 예를 들어 '(가칭)농어촌공동사업조합'의 형태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마을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부대사업으로 주말농원,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지

역농산물 조리·음식점 등의 소득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농업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corporating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in Korea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ssues of a joint business in rural areas and suggests it with an improved scheme, an incorporated. A joint business at community level is different from a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in that the latter is focused on agricultural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include various types of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into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Rural areas development policy in Korea has stimulated a community business in rural areas since 2000. Specific development plans such as Farm Experience Village, Rural Areas Traditional Theme, and Community Development Plan are known to inspire resi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o vitalize rural areas' economies by creation of new types of revenue. Based on these benefit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planned to organize 'Rural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 as a united concept of a community business(CB) in May 2010.

Because the rural community business in rural areas are at its initial stage, this study was focused on case studies and summarized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The first step for the case studies was to classify a rural community business into an urban-rural interchange, a regional development, a joint agricultural management, etc. Then, the next step performs a comparison between cases which hav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and cases which do not hav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 successful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a governmental support catalyzes areas' revenue creation business. Second, a community leader evaluates resi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vitalizes community corporations.

Third, an agricultural corporation is established so as to secure a continuation of community business.

It is important to clarify an operating regulation because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has residents as its members. Specially, the clarification should be focused on a profit share with participants and investors, a expenditure of cost from joint activities, and an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of joint facilities.

It is advisable for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to be an association corporation which seeks for common benefits rather than a business organization which seeks for profits.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corresponds with an idea of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because it has an collaborating business managements. Since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has characteristics of an agricultural business managements, it is necessary to have a separate corporation for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for example '(a tentative) Rural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with a permission to have business to seek for profits such as a weekend farm, a green-tour system, an agricultural recreation business, and a region specific restaura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a verification system so as to stimulate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s role to create jobs for the aged in rural areas.

Researchers: Jeong-Ho Kim, Moon-Ho Park
E-mail address: jhkim@krei.re.kr.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선행연구 검토 ····· 3

제2장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농업법인 제도의 추진경과 ····· 9
2. 농업법인의 관련제도와 정책 ····· 12
3.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 ····· 18

제3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법인화 실태

1.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관련 정책 ····· 23
2. 마을공동사업체의 운영 및 법인화 사례 ····· 34
3. 일본의 집락영농 법인화 사례 ····· 48
4. 마을공동사업체 운영 사례의 시사점 ····· 55

제4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 추진 방안

1. 법인화의 필요성과 의의 ····· 57
2.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2

부록 1. 농업법인 관련 법률(발췌) ····· 67
부록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 86

참고 문헌 ····· 91

표 목 차

제2장
표 2 - 1.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 ····· 11
표 2 - 2.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성격 비교 ····· 13
표 2 - 3. 회사법인의 형태별 특성 ····· 13
표 2 - 4. 농업법인의 조세감면 요약 ····· 17
표 2 - 5. 농업법인의 설립 동향 ····· 19
표 2 - 6. 농업법인의 운영주체별 현황(2009년) ····· 19
표 2 - 7.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 및 출자금 현황(2009년) ····· 20
표 2 - 8.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 현황(2009년) ····· 21
표 2 - 9. 농업법인의 수입유형별 분포(2009년) ····· 21

제3장
표 3 - 1. 농협 작목반의 품목류별 현황(2008년) ····· 24
표 3 - 2. 정부지원 농촌마을공동사업 현황(2009년) ····· 25
표 3 -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내용 ····· 33
표 3 - 4. 성공적인 마을공동사업체의 조직 형태별 분포(2010년) ····· 35

제4장
표 4 - 1. 개인경영과 협업경영의 성격 비교 ····· 59
표 4 - 2.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격 비교 ····· 63

그 림 목 차

제3장

그림 3 - 1.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위상 ····· 29
그림 3 - 2. 광대2리 녹색농촌체험관 ····· 37
그림 3 - 3. 광대2리 김치가공체험장 ····· 37
그림 3 - 4. 부래미마을 입구 ····· 39
그림 3 - 5. 부래미마을 도농교류센터 ····· 39
그림 3 - 6. 한드미마을 입구 ····· 41
그림 3 - 7. 한드미마을 마을회관 ····· 41
그림 3 - 8. 천장리 마을회관 ····· 42
그림 3 - 9. 천장리 도농교류센터 ····· 42
그림 3-10. 창포마을 입구 ····· 44
그림 3-11. 창포마을 체험안내 포스터 ····· 44
그림 3-12. 신평리 들녘 전경 ····· 46
그림 3-13. 신평리 공동육묘시설 ····· 46
그림 3-14. 양지말영농조합 정미소 전경 ····· 47
그림 3-15. 일본 집락영농 개념도 ····· 50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 최근에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촌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1990년대에는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마을의 영농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원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2004년부터 시작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200여 개 권역에서 주민 협의체가 주도하여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밖에 소규모 사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등도 마을 공동체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음.
- 2009년부터 마을의 논 전체를 하나의 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도 정부 지원에 의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마을공동사업의 특성상 주인없이 부실 운영되거나 개인사업화되는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음.

- 마을공동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공동이 아닌 개인사업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며, 마을 단위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을 대표자가 독단으로 운영하면서 사유물이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실패의 원인은 보조금 사업의 부작용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마을공동조직으로서 사업의 운영이 미숙하다는 것임.

○ 따라서 마을공동사업 조직의 법인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운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

- 몇몇 선행연구에서 성공적인 마을공동사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정부지원을 계기로 마을공동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리더가 존재하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임.
- 따라서 마을 단위 정부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사업 조직을 하나의 경영 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농업경영과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경영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을공동사업체는 기존의 영농조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 조직의 법인화를 위한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농식품부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부터 '마을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공동조직을 법인경영체로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2010년 4월에는 농어촌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은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사업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서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마을공동사업의 법인화는 기존의 농업법인(주로 영농조합법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다양한 마을공동사업 조직을 농업법인 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임.

3. 선행연구 검토

3.1. 마을공동조직의 추진 경과와 연구 동향

○ 우리나라에 마을공동사업이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협업을 위한 농가의 조직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마을공동사업 조직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업생산 공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작목반임. 1970년에 농협이 주도하여 조직된 작목반은 1991년부터 행정주도로 조직한 협동출하반과 통합되어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 작목반을 모태로 하여 오늘날의 협업경영으로 발전한 사례도 적지 않음.
- 작목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 몇 편의 보고서와 논문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최찬호가 한국농촌사회학회지에 게재한 “작목반 협동사업 전개방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작목반의 협동조직적 성격을 규명하였음. 작목반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1993년에 농수축산신문사에서 『작목반의 현장』이라는 단행본으로 정리하였음.

○ 1981년부터 농기계 보급을 위하여 지원된 기계화영농단(당시는 '새마을 기계화영농단'으로 칭함) 사업은 마을 단위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토대로 하여 농가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기계화영농단은 농기계 작업에 적합한 노동조직을 확립하기 위한 개별경영 간의 집단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나 농작업 수탁조직의 형성은 협업경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됨.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새로운 경영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기계화영농단에 관한 연구는 농기계정책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특히 영농조직에 대하여 실증조사와 분석을 한 연구는 1984년에 이정용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지에 게재한 "기계화영농단의 운영실태 분석"이 처음이며, 1990년에는 강정일이 "기계화영농단의 관리 및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농촌경제 제14권 2호)에서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영농조직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정부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을 제시하였고, 이듬해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법제화하였음.

- 당시 농림수산부는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자경농민이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농민의 위탁에 따라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지경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영농을 대행하는 회사로 규정하였음.
- 이렇게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정리하여 1990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김정호 외)에서 전업농을 보완하기 위한 농작업대행 조직체로서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가족농의 규모화를 위한 협업경영 조직체로서 영농조

합법인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당시 영농법인의 조직체 성격에 대하여 안준섭은 1992년에 한국농촌사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농법인에 관한 일고찰 -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에서 농업의 영세성에 기초한 협업화 논리와 필요성을 정리하였음 .
- 1992년부터 추진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일명 42조 원 사업)을 필두로 정책지원사업이 생산자단체에게 집중 지원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이 양산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농업법인의 부실경영 사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나 학회지 논문 등에서 많이 지적됨.

○ 1990년대에는 농촌의 소득원 발굴과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농촌관광·휴양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충되었으며, 특히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됨.

○ 2000년대 들어 농촌정책이 강화되면서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정책사업이 개발되고 정책지원도 크게 늘어남.

- 2001년 농림부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농촌관광) 중장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란 명칭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같은 시기에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2009년 종료),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2003년 종료)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됨.
- 2003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도입되어 2004년에 처음으로 36개 권역을 선정하였으며, 권역별로 3～5년간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의 사업을 실시함.
- 2004년에는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와 주민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사무장제도를 도입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기존의 농·소·정사업을 보완하여 도농교류협력사업을 발족시켰으며, 사업 분야로 농업농촌체험사업,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농업농촌 바로알리기, 농촌폐교 공간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쌀농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화·규모화 시책으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착수되어 1차적으로 12개소의 시범사업이 추진됨. 마을의 농업법인이 중심이 되어 공동육묘, 비료·농약 적정투입, 공동방체, 농기계 적정보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 영국과 일본으로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일부지역에서는 농촌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말은 일본의 호소우치 노부타카(細內信孝) 등이 1994년부터 만들어 사용한 일본식 영어로 커뮤니티(지역사회, 지역공동체 등)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도입한 활동을 의미함. 이러한 방식은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과정을 거쳐 '사회적기업'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주민자치 방식의 마을만들기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채택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음.
- 국내의 예로 전북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주인으로 마을의 자원을 이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아닌 '마을회사'를 표방하고 있음.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 10월까지 406개 사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음.

○ 2010년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B)와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적용한 조직경영의 형태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2015년까지 3,000개소를 육성하기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음.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어촌 주민이나 귀촌 인력이 참여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공동사업체로서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자리가 줄어 지역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조직화하여 기업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부상조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둠.

○ 최근의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도에 기본연구과제로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를 채택하여 2개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실태 분석을 토대로 발전 모델과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3.2. 공동사업 조직의 법인화 관련 연구

○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가 발족된 이후 주로 농업경영체 성격의 농업법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이들 연구에서 농업법인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그 후 영농조합법인의 지역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제한 완화, 농업인 대표자 규정의 폐지, 집행이사의 한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김정호 등이 수행한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1994)과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1997)는 농업법인 제도가 발족한 후에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함.
- 2000년대에 들어 박문호 등이 "농업법인경영의 발전 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2000)를 수행하였고, 김수석 등이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제

도개선방안 연구”(2006)을 통해 농업생산법인이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농촌지역의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이 법인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예를 들어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의 법인화, 농어촌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체의 법인화 등이 강조됨.

- 김정호 등은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2006) 연구에서 농산업클러스터가 사업체로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조직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동필 등은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방안”(2009)에서 농촌지역의 다양한 경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익모델 창출과 법인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함.

○ 최근 영국과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조직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법적 조직체 형태로 CIC (Community Interests Company), IPS(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유한회사 등을 이용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농가의 마을 단위 협업조직인 집락영농 방식을 도입하여 농사조합법인 형태로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나 ‘일촌일품운동’을 토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체를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경향임.

제 2 장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농업법인 제도의 추진경과

○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률 제4228호)이 제정되고, 이어 동년 8월에 시행령, 11월에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농업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음.

- 이로써 농정사상 처음으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 주체인 농업법인이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1990년 11월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탄생하게 됨.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농업인 조직인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지소유가 가능하게 됨.

- 위탁영농회사는 영농대행서비스조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농가당 위탁영농 규모도 3ha로 제한됨.

○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농지소유는 허용하지 않음.

- 위탁영농회사 규정은 삭제되어 농업회사법인으로 대체됨.

○ 1994년 농지법 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지법상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함(단, 주식회사는 제외).
- 농지법상의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농업인의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1/2 이상이고, 대표자가 농업인이며,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2002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회사 형태의 제한을 삭제함(주식회사 형태를 인정).
- 농지법상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총출자액 1/2 이상, 대표자가 농업인, 업무집행권 1/2 이상이 농업인 규정은 존치함.

○ 2005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총출자액 한도를 삭제함.
- 농지법상의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 업무집행권 1/2 이상이 농업인 규정은 존치함.

○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대표자의 농업인 규정을 삭제함.
- 농지법 상의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존치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1998년에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업법인의 근거 규정이 이관되었고, 다시 2007년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근거 규정이 내용 변경 없이 이관되었음. 그리고 2009년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기본법의 농업법인 관련 조항을 이관받아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독립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표 2-1.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

구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8~2005년	2009년 개정
근거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영농조합법인	취지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 농업경영 합리화로 생산성 제고 ▪ 농산물공동출하, 가공·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협업적 농업경영 통해 생산성 제고 ▪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농지	▪ 농지소유 가능 ▪ 소유상한 규정 없음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 합산면적 가능	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		
	사업	▪ 농수산업과 부대사업 ▪ 농작업대행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주체	▪ 당해시·군 거주 ▪ 3년 이상 영농 ▪ 1ha 미만 농지소유자	▪ 유지 ▪ 유지 ▪ 소유상한 폐지	▪ 거주지 요건 폐지 ▪ 영농기간 요건 폐지 ▪ 농업인·생산자단체 ▪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		
	출자	▪ 농지와 현물에 한정 ▪ 1인당 총출자액의 1/3 이하	▪ 현금출자 가능 ▪ 유지	▪ 준조합원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	
	타법	▪ 민법의 조합규정 ▪ 무한책임			해산명령에 상법 176조 준용	
농업회사법인	취지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		
	설립		설립등기 후 시장·군수에 통지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 통지	폐지	
	농지소유	불가능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1/2 이상, 농업인이 대표사원,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 농지 소유 가능		소유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 가진 자가 1/3 이상농업인일 것)
	사업	▪ 농업경영 ▪ 농작업대행 (농가당 위탁상한 3ha)	▪ 위탁상한 3ha 폐지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 농작업 대행 ▪ 부대사업		

표 2-1.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계속)

구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8~2005년	2009년 개정
농업회사법인	주체	농민	농민·생산자단체·농지개량조합	비농업인 출자 가능	농지개량조합 삭제	
	출자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2 (주식회사는 1/3) 이하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4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90/100
	타법	▪ 상법의 회사규정 ▪ 무한, 유한책임				

2. 농업법인의 관련제도와 정책

2.1. 농업법인의 지위와 성격

○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영체 성격으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2-2.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성격 비교

구 분	조 합 법 인	회 사 법 인
목적	공동의 이익 증진	영리 행위
자본금	금액 제한 없음	형태별로 최저한도 설정
지분양도	조합의 승인 필요	사원 간의 양도는 자유 사원 이외의 양도는 총회 의결
의결권	1인 1표 원칙	1구좌 1표
주요의사결정	조합원 총회에 의함	대표자(사장)의 권한

○ 농업법인은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표 2-3. 회사법인의 형태별 특성

구 분	합 명 회 사	합 자 회 사	유 한 회 사	주 식 회 사
구성원	무한책임사원	유·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구성원 수	2명 이상	유·무한 각1인 이상	2~50명	발기인 3인 이상
자본금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운영기구	사원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감사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이사, 감사 1인 이상	이사, 감사 1인 이상
의결권	출자좌수당 1표	출자좌수당 1표	출자좌수당 1표	1주당 1표
지분양도	타사원의 과반수 동의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타사원 전원 동의	무제한 양도 가능
정관공증	공증 필요 없음	공증 필요 없음	공증 받아야 함	공증 받아야 함
대표선임	사원 중에서 선임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선임	사원 중에서 선임	이사 중에서 선임

주: 상법의 회사 관련규정에서 정리.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과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 농지소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농지법 제2조3호).

○ 농업법인의 운영을 위한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은 1인 1표 원칙이며,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함.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함.

2.2.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음(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2008.7.23 훈령 제38호) 제48조의 별표 4 관련).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해야 함(확인서 징구: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 이상인 법인

라. 농업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바.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아. 재무제표 징구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함.

⑶ 사후관리 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설립, 출자 등)은 총괄담당과에서 담당함.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함.

- 정부지원 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 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2.3. 농업법인 관련 세제

○ 농업법인에 대한 세금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수준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협업경영체로서 농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농업법인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면세 범위가 넓음.

○ 농업법인의 세제 혜택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보다 상대적으

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

-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의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지방세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조치가 있음.

표 2-4. 농업법인의 조세감면 요약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 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감면 • 기타소득: 조합원 수×1,200만 원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 기타소득: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제연도 포함 4년 동안 50% 감면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	• 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감면 • 기타소득: 1인당 1,200만 원(원천징수세율 5%, 지방소득세 비과세,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 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감면 •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농지양도 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좌동
양도소득세 추징	• 출자일로부터 3년 내에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좌동
기타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와 초지 외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사항 없음

표 2-4. 농업법인의 조세감면 요약(계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 감면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좌동
취득세 감면	•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부동산은 전액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50% 감면	좌동
등록면허세 감면	• 설립관련 등록면허세 전액 감면	좌동
재산세 감면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좌동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법인운영실무, 2010.1.

3.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

3.1. 농업법인의 설립 현황

○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농법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09년 말에 조사된 농업법인 수는 6,824개로 전년에 비해 8.2% 증가하였음. 법인 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5,597개로 전년보다 10.3% 증가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940개로 전년보다 1.3% 증가하였음.
- 운영주체별로 보면 출자자 공동운영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업경영이 아닌 대표자 단독운영이나 출자자 개별운영도 많이 존재함.

표 2-5. 농업법인의 설립 동향

단위: 개소, %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5,626	5,650	5,854	6,306	6,824	518	8.2
영농조합법인	4,293	4,410	4,624	5,075	5,597	522	10.3
농업회사법인	967	898	896	928	940	12	1.3
일반회사	88	66	62	56	43	-13	-23.2
기 타	278	276	272	247	244	-3	-1.2

표 2-6. 농업법인의 운영주체별 현황(2009년)

단위: 개소(%)

	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 개별운영
계	6,537(100.0)	3,821(58.5)	1,081(16.50	1,635(25.0)
영농조합법인	5,597(100.0)	3,355(59.9)	822(14.7)	1,420(25.3)
농업회사법인	940(100.0)	466(49.6)	259(27.6)	215(22.9)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조사보고서, 2010.

3.2.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농업법인의 총출자자 수는 8만 2,495명이며, 이 가운데 농업인이 93.2%이고, 비농업인은 6.7%로 조사됨.

- 법인당 출자자 수는 16.9명이며, 영농조합법인 17.4명, 농업회사법인 13.8명임. 총출자금은 1조 2,725억 7,000만 원이고, 법인당 출자금은 2억 6,000만 원이며, 출자금 중 현금출자 비율이 87.2%, 현물출자금은 12.8%임.

- 출자자수 규모별로는 5~9인의 사업체가 6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49인이 17.8%, 5인 미만이 12.9%, 50인 이상이 5.8% 등의 순임. 출자금 규모별 사업체는 1억~5억 원이 45.1%, 5,000만~1억 원이 23.1%, 5,000만 원 미만이 19.9%, 5억 원 이상이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7.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 및 출자금 현황(2009년)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 분	출자 법인 수	출자자 수				출자금			
		계	농업인	비 농업인	법인당	계	현금 출자	현물 출자	법인당
합 계	4,889	82,495 (100.0)	76,855 (93.2)	5,498 (6.7)	16.9	1,272,574 (100.0)	1,109,106 (87.2)	163,468 (12.8)	260.3
영농조합	4,171	72,552	68,194	4,302	17.4	918,569	791,868	126,701	220.2
농업회사	718	9,943	8,661	1,196	13.8	354,005	317,238	36,767	354.6

주: 1) 출자법인 수는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중 단독사업체, 본사·본점인 법인만 조사
2) 출자자 중 생산자단체(142개)는 미포함.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조사보고서, 2010.

○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만 7,681명이며, 이 가운데 상근종사자는 2만 4,763명임.

- 농업법인당 종사자 수는 7.7명이며, 영농조합법인은 법인당 7.1명,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당 10.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상근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보면, 5인 미만이 62.7%, 5~9인이 26.4%, 10~49인이 10.4%, 50인 이상이 0.5% 등으로 영세한 사업체가 많음.

표 2-8.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 현황(2009년)

단위: 개, 명(%)

구 분	사업체	종사자 합 계	상근종사자			임시/일일 종사자	법인당 종사자 수
			계	출자자	고용		
합 계	4,902	37,681 (100.0)	24,763 (65.7)	11,757 (31.2)	13,006 (34.5)	12,918 (34.2)	7.7
영농조합법인	4,177	29,803	19,654	10,147	9,507	10,149	7.1
농업회사법인	725	7,878	5,109	1,610	3,499	2,769	10.9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 농업법인의 농축산물 판매(수입) 유형별 사업체를 보면, 농업생산이 1,951개소(39.8%), 유통판매가 1,052개소(21.5%), 가공판매가 853개소(17.4%), 농업서비스가 352개소(7.2%) 순으로 조사됨.

표 2-9. 농업법인의 수입유형별 분포(2009년)

단위: 개(%)

구 분	계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 업 서비스	기 타 사업수입
합 계	4,902 (100.0)	1,951 (39.8)	853 (17.4)	1,052 (21.5)	352 (7.2)	694 (14.2)
영농조합법인	4,177	1,668	717	926	249	617
농업회사법인	725	283	136	126	103	77

주: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및 축산 포함. 농업서비스는 영농대행 포함.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조사보고서, 2010.

제 3 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법인화 실태

1.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관련 정책

1.1. 마을공동사업체의 추진 경과

○ 우리나라는 농업경영의 영세성에 기인하여 영농활동을 위한 협업조직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농촌정책이 강화되면서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의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영농 활동과 관련하여 농작업공동조직,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농산물 구매·판매조직 등이 형성되었음.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형태는 마을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있음.

- 농작업공동조직을 바탕으로 한 위탁영농조직과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대부분 1990년에 위탁영농회사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소규모 영농조직만이 운영되는 실정임.

○ 작목반은 1970년대부터 농협이 육성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조직으로서 품

목별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조직이며,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2008년 말 기준으로 1만 9,287개가 조성되어 있음.

- 작목반은 기술 중심의 개념으로 농협의 산지유통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회원제 공동출하조직(약칭 '공선출하회')으로 전환됨.

표 3-1. 농협 작목반의 품목류별 현황(2008년)

단위: 개소(%)

계	식량작물	과수	채소	축산	화훼, 기타
19,287	2,821	5,180	8,241	1,221	1,824
(100.0)	(14.6)	(26.9)	(42.7)	(6.3)	(9.5)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2009.

○ 2000년대 들어 농촌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 대표적으로 200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과 정보화마을 추진사업, 2002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2004년에 착수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이 있음.

○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2001년에 당시 행정자치부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라는 개념으로 도입한 시범사업이며, 초기에는 도별로 1개 테마마을을 선정하여 전통문화와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농촌을 조성하고 높은 소득과 정이 살아 있는 지역공동체를 재건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음.

-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별로 주민이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사업추진 주체로 참여하고 정부는 주민자율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임. 사업비는 10억 원 이상(국비 10억 원)으로 공간정비와 편익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까지 추진되다가 중단됨.

- 사업대상 마을은 2001년에 9개소를 선정한 후 2002년에 14개소를 추가하여 총 23개소이며, 그중에서 일부는 2010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 3-2. 정부지원 농촌마을공동사업 현황(2009년)

사업명	착수 연도	주요내용	소관부처	실적(개소)	
				2009년	누 계
아름마을가꾸기	2001	주민자율적 마을개발 시범사업 방식. 공간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10억 원 이상 지원	행정안전부	-	23
정보화마을 추진사업	2001	정보인프라(광케이블, PC, 소프트웨어 등), 정보화교육, 전국네트워크 조성 등	행정안전부	12	382
자연생태 우수마을	2001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 또는 복원한 사례지역. 3년간 지정, 마을당 1천만 원 지원	환경부	16	117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	2002	20호 이상 마을 대상. 체험장, 편의시설, 경관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마을당 2억 원(국비 1억 원)	농림수산 식품부	78	442
농촌전통테마 마을 육성사업	2002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농특산물생산·가공·판매시설, 체험시설, 숙박 편의시설 등. 마을당 2년간 2억 원 지원	농촌진흥청	30	168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2004	마을권역 단위로 종합개발. 마을경관정비,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사업 등. 3년간 50억~70억 원 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45 (권역)	176 (권역)

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 개소 수이며, 권역별로 3~5개 마을을 포함
자료: 관계부처 자료 정리.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의 정보이용 환경의 향상을 돕고 주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1년 3월에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제1차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사업 내용은 정보화마을별 광케이블 포설, 초고속 인터넷 장비 및 마을 내 각 가구까지 초고속인터넷(ADSL) 설치, 마을정보센터 설치, 교육용 PC 제공 및 정보화 교육, 농가용 PC 보급 등임.
- 추진 실적은 2001년 11월에 25개 마을을 선정하여 착수하였으며, 2003년 78개 마을, 2004년 88개 마을, 2005년 89개 마을, 2006년 26개 마을, 2007년 34개 마을, 2008년 30개 마을, 2009년에 제8차로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382개 마을을 지원하였음.

○ 2001년에 농림부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농촌관광) 중장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란 명칭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함.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하는 데 목적을 둠.
- 사업내용은 20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2억 원(국고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공동 생활기반시설, 체험기반시설, 경관조성 등을 보완하는 데 쓰여지게 되며, 마을 주민에게는 고객 서비스 등 전문교육이 실시됨.
- 사업 실적은 2002년에 44개(초기 18＋연말 추가 2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점점 사업량이 증가되어 2009년에는 78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총 442개 마을을 지원하였음.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마을단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전통문화와 자연경관 등의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를 주제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함.

- 사업 내용은 마을당 1년에 1억 원씩 2년간 지원하도록 하여 하드웨어로는 고유테마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농특산물 생산·수확·가공·판매시설, 지역문화 체험시설, 마을환경 조성,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로는 전문가 컨설팅과 마을별 자원 발굴 등을 실시함.
- 사업 실적은 2002년 9개 마을, 2003년 18개 마을, 2004년 17개 마을, 2005년 21개 마을, 2006년 25개 마을, 2007년 21개 마을, 2008년 27개 마을, 2009년 30개 마을로 총 168개 마을임.

○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형태로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팜스테이(farm stay) 마을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현재 233개 마을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음.
- 농협에서는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알뜰한 휴가 및 휴양자원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
- 신규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인근에 문화유적지 등 볼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재정적인 지원은 없으나 홍보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마을 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최대 3년간 월 100만 원 수준).
- 현재 농산어촌체험마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이 있음.

○ 정부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04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권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7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임. 다만, 2011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함.

-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생활권·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하며,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사업내용: 지역특성별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기초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 ▪ 마을경관 개선: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 기초생활 시설: 마을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 신·개축 등
  - ▪ 소득기반 시설: 공동육묘, 공동저장·집하시설 등
  - ▪ 은퇴자의 농촌정주 지원을 위한 마을기반 정비: 마을재개발, 재정비 등
  - ▪ 지역역량 강화: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
  - ▪ 권역별 잠재자원 발굴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지원내용: 사업비는 권역당 5년간 40억~70억원 범위 내(여건별 차등지원),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70%, 지방비 30%(공동시설: 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공사감리 등 기술지원 및 위탁시행

1.2.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의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4월에 농촌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3,000개소를 육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함.

- 농어촌공동사업체를 조직화하여 기업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성·지속성·상부상조 공동체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서

비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임.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마을 단위의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 어업회사처럼 기업 경영 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임.

그림 3-1.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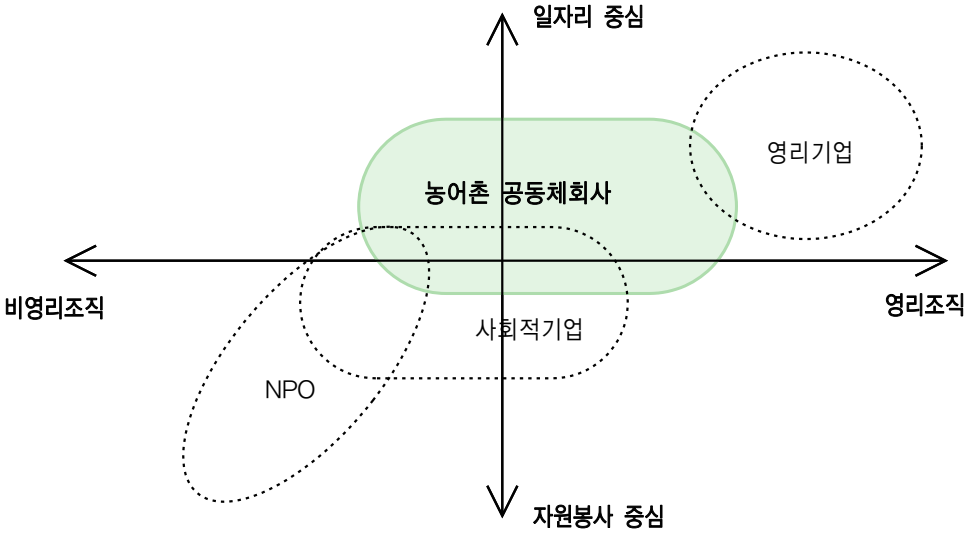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사업의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① 농식품 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임.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마을공동 전통식품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농가레스토랑 운영, 친환경 농자재 생산, 지역공동 마케팅 등을 들 수 있음.

②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임.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어촌체험관광 네트워크, 농어촌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을 들 수 있음.

③ 지역개발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임.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 지역경제 디자인 센터 등을 들 수 있음.

④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 노령화, 농어촌의 분산거주 등에 따른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임.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주거복지센터, 통합·거동 불편자 교통서비스 제공, 반찬 배달, 노인복지센터, 방과후 공부방 운영, 결혼이민여성 외국어강사 활용사업 등을 들 수 있음.

⑤ 복합형: 위의 사업을 혼합하거나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획하고 있음.

① 창업 보육센터 운영 및 교육·컨설팅 지원

-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창업 상담, 법인화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원·기술 중개, 인재육성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일반기업·출향인사 등과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1사1촌 운동’을 ‘1사1공동체회사’로 발전 유도
- 초기 단계에는 도시민 귀촌 활성화와 연계하여 1～2개 보육센터를 시범 지정·운영하고, 성과 평가 후 지역단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②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관련사업 연계 지원

-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과 연계 지원
- 사회적기업, 시니어창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부처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자활사업·노인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 시니어창업지원단사업(중소기업청) 등
- 전국 1,274개 지역 농·수협(농협 1,181, 수협 93)이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도농교류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③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우수사업지원 신규 추진
- 농림수산식품사업 연계지원 등 포함, 농어촌공동체회사 3,000개 육성
-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 추진 및 자립에 필요한 핵심요소 지원: 활동비, 경비, 컨설팅, 교육비 등
  * 개소당 연간 5,000만 원(국고 50%, 지방비 50%) 수준, 최장 3년간 지원

④ 귀촌 인력 활용
- 교사, 예술가, 기술자, 기업경영자 등 도시민들이 은퇴 후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도시민의 기획·경영·재무회계·마케팅 등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

⑤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
- 법적 지원근거 마련:「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개정('09.11.27 국회 제출),「(가칭)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법」제정 추진
- 보험료 지원: 기존 농식품 관련 사업비를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시에 산재보험 등 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세제 지원: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격에 따라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등으로 인증받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참고]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요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민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2에 따른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소비자행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 목적 설립: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

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⑤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서비스 수혜자, 후원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총회(회원으로 구성), 주주총회 등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야 함.

⑥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표 3-3.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내용

	지원 내역	비고
경영지원	세무, 노무, 회계 등 컨설팅 비용 제공 • 연간 1천만 원, 3년 2천만 원 한도 내 • 예비는 연간 3백만 원, 3년 5백만 원 내	포로보노(무료 경영 봉사단) 연계
세제 지원	법인세와 소득세 4년간 면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4년까지, '10 신설)	세금감면은 효과 적음 피고용인 전체에 지원 가능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전문인력 채용시 3명 이내 월 15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 예비 2년, 사회적기업 3년 내 지원 • 월 859천 원('10년)과 사회보험료 8.5% • 연차별로 자부담 늘림	2010년 1,4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
사업개발비 지원	R&D,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비용 지원 • 7천만 원(예비는 3천만 원 한도) • 노동부와 지자체 매칭펀드	2010년 신설 일부 시설구입도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2. 마을공동사업체의 운영 및 법인화 사례

○ 마을공동사업체는 아직 개념이나 정책적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최근에 사업이 성립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2010년 하반기에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고자 함.

○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파악을 위하여 시·군 단위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10월에 집계한 바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일부 누락된 시·군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총 845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다시 분류하여 210개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였음.

- 조사된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정부 각부처의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사례가 많음. 즉, 농식품부(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행정안전부(정보화마을, 아름마을사업), 지식경제부(지역특화사업),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 등임.
- 이 가운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 210개소를 사업지역 범위로 구분하면 시·군 단위가 56개소, 읍·면 단위가 34개소, 마을 단위가 120개소로 조사됨.
- 특히 시·군 단위를 사업 범위로 하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사업 형태는 사회복지서비스형이 대부분이고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나 민간단체임. 또한 읍·면 단위의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사업으로 식품산업형이 많고, 조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성공적인 농어촌공동체회사 가운데 마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120개소는 마을공동사업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 형태와 조직 형태를

분류하여 <표 3-4>와 같이 정리하였음.

- 마을공동사업체의 사업 형태를 보면 도농교류형이 58개소(48.3%)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식품산업형 22개소(18.3%), 지역개발형 22개소(18.3%), 복합형 18개소(15.0%) 등의 순이며, 사회복지서비스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복합형의 경우에는 도농교류와 농식품가공사업 등을 겸하는 것으로 보임.
- 마을공동사업체의 조직 형태를 보면 새마을회나 마을영농회와 같은 임의조직이 61개소(1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농조합법인 53개소(44.2%), 민간단체 기타 5개소(4.2%), 농업회사법인 1개소(0.8%) 등으로 조사됨.

표 3-4. 성공적인 마을공동사업체의 조직 형태별 분포(2010년)

단위: 개소(%)

	계	임의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민간단체, 기타
합 계	120 (100.0)	61 (50.8)	53 (44.2)	1 (0.8)	5 (4.2)
농식품산업형	22 (18.3)	6	15	-	1
도농교류형	58 (48.3)	37	20	-	1
지역개발형	22 (18.3)	7	13	-	2
사회복지서비스형	-	-	-	-	-
복합형	18 (15.0)	11	5	1	1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조사자료를 재집계.

○ 또 하나의 마을공동사업체 형태로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들녘별경영체'가 있는데, 들녘별경영체는 2009년 12개소와 2010년 18개소가 지정되어 총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들녘별경영체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2개소, 강원도 3개소, 충청북도

4개소, 충청남도 4개소, 전라북도 5개소, 전라남도 5개소, 경상북도 5개소, 경상남도 2개소임.

- 들녘별경영체의 조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 10개소이고, 작목반과 같은 임의조직이 20개소임.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들녘별경영체는 기존의 영농조합과 동등한 것으로 보임.

○ 이하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들녘별경영체 등의 정책사업 대상이 된 마을 사례를 현지 조사하여 특히 조직 운영과 법인화의 실태를 중심으로 정리함.

2.1. 여주군 능서면 광대2리 "넓은들 녹색농촌체험마을"

○ 연혁 및 활동 내용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위치하는 평야마을로 여주IC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함.
- 지역 주민은 82세대 190명. 벼농사, 밭농사, 과수, 축산 등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지대임.
- 2002년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03년에 사업 실시. 마을회관을 마을정보센터로 만들어 PC 20대, 주민에게 100여 대 보급. 2억 원 보조사업으로 최신식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약 3,300㎡ 조성
  *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고구마 인터넷판매 착수
- 2004년 마을 주민의 연고로 삼성에버랜드와 1사1촌 자매결연. 연 2회 방문체험 및 농산물직거래 유지. 특히 김장김치나누기사업 참여
-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 보조 2억 원＋자부담 4,000만 원(마을기금＋출자)으로 농촌체험관 약 200㎡(부지 약 430㎡) 건축
  * 마을공동재산으로 소유권 등기: 광대2리새마을회

○ 공동사업체 운영 실태

- 2010년부터 도농교류 체험활동 시작. 계절별 수확체험(시설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고구마, 옥수수, 느타리버섯, 배), 농장체험(젖소농장), 천연염색, 김치담그기체험 등

  * 체험프로그램 수입 5,000원/회, 3개 프로그램+점심식사=2만 원

- 연간 방문자 수는 약 1만 명. 김치만들기 체험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며, 여행사와 연계하여 외국인들이 연간 2,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음.
- 체험 경비로 부녀회인건비 1인당 1회 3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현재 1,100만 원 적립 실적

○ 법인화 의향과 계획

- 2010년 봄부터 농촌체험활동을 시작하여 점차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수익사업이 빈약한 실정임.
- 공동수익사업이 확충되고 마을공동재산이 증가하면 법인화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신청 계획이며, 군유지를 임차관리하여 산나물 재배, 도농교류시설(족구장 조성)과 납골당 복지시설 등을 계획 중임.

그림 3-2. 광대2리 녹색농촌체험관

그림 3-3. 광대2리 김치가공체험장

2.2. 이천시 율면 석산2리 “부래미마을”

○ 연혁 및 활동 내용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석산2리에 위치한 안성 이씨 집성촌. 조선의 개국공신인 이국번이 낙향한 이후에 후손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함.
- 30가구(70여 명) 주민들 대부분이 영세농으로 벼농사, 밭농사, 과수원(배, 포도) 등에 종사하고 있음.
  * 최근에 귀촌 이주자 3가구 증가
- 2002년 부래미(富來美) 상표 등록. 부래미란 불암리(佛岩里)가 변형된 이름으로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뜻함.
- 2003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2억 원 지원
- 2003년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지정. PC 15대 설치, 마을 홈페이지 개설
- 2004년 (주)하이트맥주 고향의꿈 대잔치사업 선정, 5,000만 원 지원
- 2004년 경기도의 슬로푸드 마을 지정
- 2005년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석산권역 6개 마을), 총 65억 6,000만 원 사업비 투자
- 2007년 다목적체험관 준공. 연건축연면적 1,282㎡(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강당(807㎡), 세미나실(215㎡), 펜션식 숙소(260㎡, 2개동 9실) 등
- 2008년 농촌여성창업지원사업 ‘인항아리’ 입주. 공장 90㎡ 설치. 장아찌·장류·조청·잼류 등 판매
-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단계 종료

○ 공동사업체 운영 실태

- 마을공동사업으로 농촌체험, 정보화마을, 세미나장 대여, 숙박시설, 농기구 전시장, 동물 농장 등 운영
- 연간 방문자 수 약 3만 명. 체험비는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체험수입 중에서 마을운영비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개별농가에 지급

○ 법인화 의향과 계획

- 2008년부터 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검토하였으나,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법인화를 미루는 이유: 운영자 권한 문제, 세금 부담 등

그림 3-4. 부래미마을 입구

그림 3-5. 부래미마을 도농교류센터

2.3.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마을”

○ 연혁

- 충청북도 가곡면 어의곡리는 소백산 입구에 위치한 산촌. 40가구(70명)가 농경지 79ha(논 20ha, 밭 59ha)를 경작하는 영세농 마을
  * 체험사업 관계자 등의 이주로 현재 43가구(90명)로 증가
- 2003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가꾸기 사업 ‘한드미마을’로 출발
- 2004년 농협의 팜스테이마을로 선정
- 2007년 한드미유통영농조합법인 설립. 마을 주민 중 20가구가 1억 7,000만 원을 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운영중임.
  * 2010년 현재 고령자 등을 제외한 26가구 출자, 출자금 2억 6,000만 원
  * 법인체 상근직원 7명(마을사무장 2, 농촌유학센터 교사 2, 원어민

교사 1, 주방 2)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유학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 공동사업체 운영 실태

-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촌관광(약선체험관, 한방건강관리실, 삼굿구이, 뗏목캠프, 전통음식만들기 등), 식당, 숙박, 고랭지 농산물판매
  * 체험관광객: '04년 7,107명 → '09년 3만 300명
  * 소득액: '04년 1억 2,500만 원 → 4억 5,200만 원
- 농어촌유학 유치(4년차)
  * 학생 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고자 마을주민이 함께 농어촌유학 활동을 전개하여 2006년 당시 9명이던 학생이 유학생 전입으로 인해 2010년 현재 35명으로 증가
- 한드미유통영농조합법인 운영
  * 상거래팀, 농촌체험팀, 조리팀(부녀회 중심), 농촌유학팀, 생활환경정비팀, 노인회(마을 허드렛일 담당)의 6개팀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
  * 각 팀별 매출액의 10%, 숙박비의 70%는 사무장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할당하고, 나머지는 팀별 배분. '09년의 경우 마을주민은 공동사업활동의 참여 정도에 따라 170만~700만 원 정도씩 배당됨.
  * 법인 운영결과를 연말에 평가하여 운영 경비, 재투자계획, 법인활동계획, 성과 배분 등에 대한 주민 합의를 도모

○ 농업법인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법인화의 직접적인 동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었으며, 농업법인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대외적인 신뢰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출자자 및 경영진의 권리 문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에 포함된 조합원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자자의 권리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예: 농업협동조합법 준용)
- 노인회 및 부녀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활동

으로 충족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인증을 꺼려하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그림 3-6. 한드미마을 입구

그림 3-7. 한드미마을 마을회관

2.4.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

○ 연혁 및 활동 내용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는 칠갑산(七甲山)에 위치하는 산촌마을. 천장호(天庄湖) 아래의 마을로 지대가 천장처럼 높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지역 주민은 37세대. 경지는 논밭 포함 14.2ha(4만 3,000평) 정도로 영세하여 벼농사표고버섯, 복분자 등이 특산물
-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천장리와 용두리 5개 부락). 천장리는 28억 원 사업비로 도농교류센터(약 830㎡, 2층건물, 식당, 숙박), 인조잔디축구장(약 1만 3,200㎡), 실외수영장(약 1,000㎡), 웰빙체험농원(약 3만 3,000㎡) 등을 설치
  * 토지는 개인소유지를 장기 임차(축구장 20년 임차계약)
  * 시설물은 청양군수 명의로 등기된 상태. 5년 후 경영실적 평가하여 법인소유로 이전 계획
- 2008년부터 마을공동재산을 공동등기하기 위한 법인화 작업에 착수

- 2009년 7월 '천장리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출자: 37세대 각각 조합원 1명씩+출향인사 7명+후원기업체 1개
  출자한도는 개인 500만 원, 기업 2,000만 원
  출자총액 5,400만 원

○ 공동사업체 운영 실태
- 도농교류센터, 연수시설(축구장, 수영장), 웰빙체험농장 등 운영
- 연간 방문자 수 약 20만 명. 체험비는 시설이용에 따라 상이
- 수익금 배당은 노동보수 지급 및 출자금 배당으로 명확히 구분
  * 배당 원칙: 출자자 70%, 사업적립금 20%, 마을기금 10%
  * 금년 이익금 배당액 1억 2,000만 원
- 2010년 법인세 150만 원 납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회계처리(월 12만 원)
  * 세무사무소에 의뢰함으로써 회계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해소

○ 법인화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 공동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참여가 중요
- 마을공동사업체의 대표는 자기 희생이 많으나 보수 지급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수 산정을 위한 공통지침이 필요함.
- 천장초등학교 폐교시설 매입 계획.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신청중

그림 3-8. 천장리 마을회관

그림 3-9. 천장리 도농교류센터

곶감깎기, 다듬이연주 등으로 체험관광객 연간 2만 명 정도 방문

- 마을공동사업으로 부녀회 중심의 장아찌가공, 창포고추장, 창포술, 창포비누와 샴푸, 산마물채취 등 실시
- 수익 배분: 체험활동 노임소득 20명 정도(일당: 대표자 5만 원, 부녀자 3만 원). 2009년 마을공동수익 3,000만 원(마을운영경비 1,500만 원 공제하고 순이익 1,500만 원 기금 적립)

  * 회계처리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 실시

  * 마을사무장 보수 월 120만 원(정부보조 108만 원＋마을조달 12만 원)

○ 법인화 의향과 계획

- 내년 쯤에 영농조합법인 설립 예정

  *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신청 중. 마을대표 보수 월 200만 원 지급 예정

그림 3-10. 창포마을 입구

그림 3-11. 창포마을 체험안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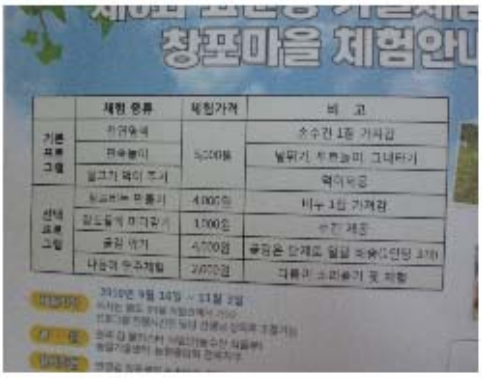

2.6.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유기쌀 작목반”

○ 지역 및 영농 개황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는 전형적인 답작지대로서 충북의 고품질 쌀 재배단지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음.
- 신평리의 농지면적은 800ha, 농가수는 400여 명, 평균 가구당 경지면적은 2ha 정도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작지로 영농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농가는 주로 쌀농사와 축산(한우)에 종사하고 있음.
- 특히 유기농업 지역으로 오창 유기농쌀 재배면적이 전국 유기농쌀의 16%를 점하고 있는 최대 산지임.
- 과거 4회에 걸쳐 오창유기농 축제를 총 1억 2,000만 원 예산(농가 6,000만 원+농협 6,000만 원)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청원생명축제’로 전환하여 군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음.

○ 쌀 작목반 경영실태

- 신평 유기농 쌀 작목반은 1995년에 결성되어 단지로 영농해 왔음.
- 작목반 참여농가 24호에 재배면적은 40ha이며, 오창농협의 알선으로 전체면적에 두레생협과 계약재배 형태로 우렁이 농법의 유기농쌀을 재배하고 있음. 12명이 농기계 오퍼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농가는 농기계작업을 위탁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제일제당과 계약재배 형태로 2ha 규모의 우리밀재배(오창 전체 10ha)를 추진함.
-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들녁별 경영체’로 지정되어 총 2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1ha의 부지에 못자리 뱅크를 설치하였음. 전체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음.

  * 발아 및 초기육묘는 고정시설 건물(약 3,300㎡)에서 이루어지며, 후기육묘는 비닐하우스(약 1,600㎡)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앙작업을

완료한 후 시설은 타작물 재배를 고려 중임.

- 향후 재배작물에 대하여 농협과 협의 중임(우리밀, 흑미, 옥수수).

○ 법인화 의향과 계획

- 단일 작목으로 수익이 적기 때문에 법인화하기 어려움. 법인화를 할 경우에 연중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확대해야 하므로 자본이 많이 소요되고 시설 설치도 필요함.

그림 3-12. 신평리 들녘 전경

그림 3-13. 신평리 공동육묘시설

2.7. 청원군 북이면 화성리 “양지말영농조합법인”

○ 지역 개황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화성리는 전형적인 수도작 지대로 들녘 규모는 240ha에 이르며, 농가는 대부분 수도작+한우 형태의 영농을 하고 있음.

○ 양지말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실태

- 2005년에 관내의 전업농가 경영주 5인이 농작업수위탁 및 정미소 사업을 중심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였음. 법인 출자금은 5,000만 원

이고, 현재 자본금은 3억 원 정도임.

- 지역 전체 논의 80%에 이르는 면적을 단지화하게 되면서 2009년에 농가 27호가 규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들녘별 경영체'로 지정되었음.
  * 정부의 지원금 2억 7,000만 원으로 광역방제기, 종자발아기, 비료살포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였음.
  * 들녘별경영체 지원을 받아 법인 출자자 6명 이외에 참여농가 21호에게 광역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 경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에 대규모 축산업자와 계약재배 형태로 사료용 옥수수를 10ha 정도 재배하였으며, 2010년에는 27ha 규모로 사업을 확대함.
- 현재 쌀 판매가격은 80kg당 16만 원 선이며,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음.
- 향후 공동사업으로는 농약 살포, 육묘사업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법인화에 대한 의견

-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마을의 농지를 집단경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농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들녘별경영체 지정도 받게 됨.
- 법인의 장점은 신용능력 등 마케팅의 유리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림 3-14. 양지말영농조합 정미소 전경

3. 일본의 집락영농 법인화 사례

3.1. 집락영농의 동향

○ 일본의 집락영농은 마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농지이용 또는 농업경영 형태이며,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를 공동 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초보적인 조직에서부터 마을 전체의 농업을 하나의 농장형태로 경영하는 '마을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음.

- 집락영농의 공간적 범위는 한 개 또는 몇 개 마을을 범위로 하여 마을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설립되며, 조직의 형태는 임의조직 또는 법인체로 형성됨.

○ 집락영농의 목적은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계 시설의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집락 단위로 농지이용의 합리화나 기계·시설의 공동이용, 공동작업에 의한 농산물 생산비의 절감 및 농산물가공, 농촌관광사업 등 6차산업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에 있어서 전업농가, 겸업농가, 여성, 고령자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집락 전체의 영농의욕을 높인다는 것임.

- 특히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농업생산 활동의 유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나 겸업농가를 포함한 집락영농을 특정농업법인으로 지정하여 가족농 및 일반 농업법인과 함께 '인정농업자'로 육성하고 있음.

○ 집락영농 수는 농림수산성 자료에 의하면 2000년 9,961개에서 2009년 2월 현재 1만 3,436개 조직으로 증가함.

- 품목별로는 쌀, 과수, 채소를 취급하는 마을영농은 감소하였으며, 잡곡·서류·두류, 맥류를 취급하는 집락영농은 증가 경향임.

○ 집락영농은 발전 단계에 따라 농기계 공동이용이나 농작업 수위탁에 한정한 단순한 형태에서 협업경영 형태나 '1마을 1농장' 형태 등으로 진화하고 있음.

- 사업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 농작업 수위탁,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소비자와의 교류, 직거래 등과 같이 1차 산업적인 영역에서 2차, 3차 산업적인 영역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
- 조직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마을 주민들이 합의하여 우선 영농조합을 만들고, 마을 내 참가자는 농지를 영농조합에 임대함. 농지를 임대한 농가는 여유 노동력과 농기계가 발생하므로, 여유 노동력은 영농조합에 취업할 수 있고 농기계도 마을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것은 영농조합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여 농기계 이용을 도모하게 됨.

○ 집락영농은 리더와 농기계운전자, 보조작업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

- 리더는 집락영농을 운영하고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조작업자는 농지를 임대하여 노동력의 여유가 있는 고령자나 여성 농업인 등이며, 정식 직원이라는 신분보다는 농작업에 대해 일당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종의 비정규직으로도 가능함.

○ 집락영농은 일반 농사조합법인과는 달리 마을의 전체 농가가 참가하는 경우에 농지를 단지화할 수 있는 지연조직이기 때문에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경지의 분산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음.

- 첫째,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거나 노동투입시간을 대폭 줄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둘째, 여유 노동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소나 축산 등 노동집약 부문에 투입하여 마을 전체의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조직경영이기 때문에 개별경영이 실현하기 어려운 가공부문이나 도농교류, 농촌체험, 직거래 등 서비스부문까지 다각적인 경영도 가능함.

다각경영을 통하여 마을 내에 추가적인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그림 3-15. 일본 집락영농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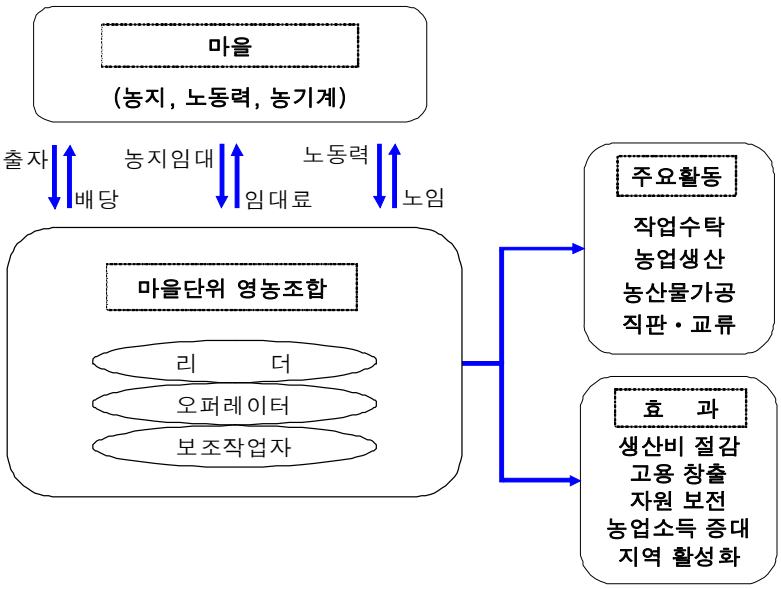

3.2. 집락영농의 사례: 수숙영농조합[1]

(1) 지역농업의 개요

○ 수숙지역은 4개의 집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세대 수는 268호(2000년 센서스)이고 농가 수는 62호임. 경지면적은 53ha이며, 그중 논이 24ha(44.1%)이고, 감귤 과수원이 21ha(39.8%)임.

- 10여 년 전까지 노지감귤은 1~2ha 규모의 농가가 40호, 하우스감귤도 30

[1] 이 부분은 品川優, 條件不利地域農業-日本と韓國(筑波書房, 2010)의 '제5장 집락영농·집락협정의 광역화 실태와 과제'의 일부를 번역하여 정리한 것임.

여 호가 있었지만, 가격의 하락과 함께 이농자가 증가하고 특히 하우스 감귤은 원유가격 파동으로 이농이 늘어나 2009년 현재 노지감귤 30호(약 20ha), 하우스 감귤 15호(4.5ha)로 감소하였음.

○ 4개의 집락 가운데 논이 가장 많은 집락이 대총집락이고, 수숙집락은 감귤이 많으며, 미농기집락은 논이 적은 어촌지역이고, 대자수숙집락은 감귤, 딸기, 야채, 축산과 쌀의 복합경영지역임.

⑵ 수숙영농조합의 성립 과정

○ 대자수숙에서는 1990~1991년에 수숙집락의 일부와 삼총집락을 대상으로 수익면적 5~6ha에 평균 구획 10a의 포장정비사업을 실시하였음. 그 후 1993~1994년에는 수숙집락의 나머지와 대총집락을 대상으로 수익면적 18ha에 평균구획 10a의 포장정비사업을 실시함.

○ 2000년대 들어 농가의 고령화와 후계자가 부족한데다가 쌀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포장정비를 실시한 논에도 경작포기지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됨.

○ 2002년에는 노지감귤 단지의 기반정비사업 실시를 계기로 사업대상 지역 및 지역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계획을 검토하게 됨. 특히 대자지역 내에서 논 면적이 가장 넓은 대총집락에서는 콤바인의 갱신시기에 도달하게 되어 대총집락으로부터 수숙집락에 대하여 집락영농의 추진을 타진하게 됨.

- 집락 간의 협의는 지금까지 대자지역이라는 마을 전체의 역사적 관계에 더하여 포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협의회가 설치된 것이 바탕이 되어 진행됨. 나아가 삼총집락도 수숙집락의 일부와 함께 포장정비를

하게 되면서 양 집락 간의 거주지와 소유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집락영농 추진에 참여하게 됨.

○ 2002년에 3개 집락에서 집락영농의 설립준비회가 결성되고, 2003년에 임의조직 '수숙영농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름.

- 대자지역에 속하는 미농기집락은 어촌으로서 논이 적고 포장정비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숙영농조합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 수숙영농조합에는 총 52호가 참가하여 호당 3,000엔을 출자함으로써 합계 16만 엔을 자본금으로 적립함.

○ 수숙영농조합의 설립 목적은 경작포기지를 다시 경작하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으로 2003년에 전체 4.4ha를 복구하고 사료작물과 사료용 벼를 재배하게 됨.

- 벼농사의 경운정지는 조합원 각자가 담당하며 이앙의 대부분도 조합원 스스로가 작업하고, 수확작업은 농협 리스사업을 활용하여 수숙영농조합이 콤바인을 빌려 수탁작업을 하고 있으나, 논이 많은 대총집락은 콤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겸업농가가 많기 때문에 수숙·삼총집락의 농가가 영농조합을 통하여 대총집락의 농가에 벼베기를 위탁하기도 함.
-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가로부터 영농조합에 임차경영의 요청이 있었으나 영농조합이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농지 임차가 불가능하여 조합원 중에서 농기계를 소유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3인에게 의뢰하여 개인 명의로 이용권을 설정하여 영농을 하기도 하였음.

○ 2005년에는 라이스센터를 건설하여 가공사업을 시작함. 대자수숙지역에서는 전업농가나 겸업농가를 불문하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논의 작업효율을 높여서 타산업이나 타 품목으로 노동력을 투입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 수숙영농조합의 당초 목표는 조합원 농가의 노동력 부감을 경감시키고 부수적으로 휴경농지를 경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었으며, 장기적인 비전이나 수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였음.

(3) 임의조직에서 특정농업법인으로 전환

○ 2005년에 정부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이 발표되면서 수숙영농조합은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됨.
- 당초 경영소득안정대책은 밀과 대두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품목을 취급하지 않았던 수숙영농조합은 정책에 관심이 없었으나, 이듬해에 쌀을 포함한 대책으로 이행하게 되면서 법인화를 검토하게 됨.
- 수숙영농조합의 사무국을 맡은 A씨(현 법인이사)는 회계 및 세금 측면에서도 법인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에는 지도농업사회장, 농협 청색신고회 초대회장, 세무서의 국세모니터 등을 역임하는 등 세무 관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였음.

○ 수숙영농조합의 법인화를 주장한 A씨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임의조직에서는 내부유보가 불가능하다는 점
- 둘째, 임의조직이라 하지만 실태는 법인으로 간주된다는 점
- 셋째, 농협의 차입금으로 라이스센터 건설비의 자기부담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상환 불가능한 조합원이 생길 경우 내부유보도 없고 상환자금도 없다는 점
- 넷째, 수숙영농조합에서 이미 A씨가 많은 조합원의 회계지도를 하고 있는데 대한 부담이 크며, 법인화하면 일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 다섯째, 법인화하면 정부의 보조사업을 수혜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음.

○ 2006년에 '수숙농용지이용개선조합'을 설립하는 동시에 이 조합을 토대로

농사조합법인이면서 특정농업법인인 '수숙영농조합'을 설립함.

- 영농조합의 조합원은 2호가 증가한 54호, 농용지이용개선조합은 57호로 구성됨. 양자의 조합원 수 차이인 3호는 부재지주 등 농사조합의 참여자격이 없는 농가임.
- 출자금은 수숙영농조합과 마찬가지로 1호당 3,000엔을 각출하고, 조합원은 법인과 이용권 설정을 체결함. 이용권 설정면적은 12ha이고, 여기에 임의조합시에 개인 명의로 이용권을 설정한 4ha를 포함하여 총 18ha임.
- 12ha 가운데 벼 재배가 10ha이고 전작면적이 2ha이며, 전작 작물은 밀과 사료용벼임.

○ 농기계작업은 5~6인(60세 전후)의 농업인이 담당하지만, 상당수의 작업은 가능한 한 조합원 개인이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 1대 뿐이며, 현재 이앙기나 사료용 예취기 등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 또한 논이 조건불리지역에 위치하여 6개의 단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의 작업이 불가능하며, 개인에게 농작업을 맡김으로써 지역과의 유대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음.
- 농기계작업자에게는 시급 1,500엔, 보조자는 1,000엔, 제초작업은 유류대 포함하여 1,500엔, 물관리 작업은 10a당 1만 엔을 지불함.

○ 그 밖에 농사조합법인을 결성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총 200만 엔 정도의 중산간직접지불 보조금(법인설립 가산금 포함)을 지급받아 법인 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중산간지역 직접지불금은 지역 단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이 지역에서도 수숙영농조합이라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개인에 대한 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집락 공동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4. 마을공동사업체 운영 사례의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사례조사에서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와 관련된 문제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마을공동사업체를 법인화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마을의 공동사업이 늘어나면서 공동재산의 관리 또는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정책사업 지원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사업을 수주하려는 경향은 약함.
- 마을공동사업으로 수익이 늘어나 배당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회관이나 도농교류센터 등의 공동재산을 소유권 등기할 주체가 필요함. 따라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마을영농회 공동소유(예: K마을)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예: B마을)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체험활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함(H영농조합, C영농조합).
- 일본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세금 문제로 법인화가 추진되었으나, 근년에는 정책적으로 법인에 대한 혜택을 주어 장려하는 경향임.

○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 범위는 마을의 전체 주민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농업인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법인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러한 법인경영체의 성격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들녘별경영체는 기존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는 달리 들녘 단위(하나 또는 몇 개 마을)의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여 집단영농하는 방식이지만,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Y영농조합).

- 마을공동사업체는 마을 주민이 과반수 이상이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법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특히 비농민이 많거나 영농형태가 다양한 지역에서는 구성원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여 법인화를 미루는 실정임(예: B마을, O마을).

○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 일반적임.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로서 마을공동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공동사업체로 특혜 시비의 우려가 없어 선호하는 경향임.
-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마을공동사업체로 운영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농산물공동판매를 위한 유통영농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편적임(예: C영농조합법인, H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의 자율설립으로 설립이 용이한 반면, 구성원이 마을 주민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제약이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마을 전체로 수행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실정임.

○ 마을공동사업체를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조합원과 출자자, 경영자와의 책임 분담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시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합원은 설립등기에 포함된 사람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출자자에 대한 권리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예: H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 사업이 다른 별도의 법인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공적인 마을공동사업체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마을 공동으로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둘째, 리더를 중심으로 공동조직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셋째,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마을공동사업체를 법인화(영농조합법인)하여 독립된 경영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임.

제 4 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 추진 방안

1. 법인화의 필요성과 의의

1.1. 법인경영의 유리성

○ 일반적으로 농업법인은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추구하기 어려운 농업경영의 조직화 내지 협업화를 통한 유리성과 그 경영단위의 법인화를 통한 유리성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음.

○ 협업화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경영의 전문화 혹은 복합화(다각화)를 통한 경제적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음. 즉, 개별농가의 소규모 생산을 통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물의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를 통한 판매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 나아가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불가능한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협업경영이 장차 농기업(agri-business)으로 발전 가능한 새로운 농업경영의 형태라는 점임. 전통적인 농업은 일차적인 농산물의 생산에 한정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최근에 들어 농가 단위에서도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고 있음. 협업경영은 개별농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사업 능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별농가의 생산을 바탕으로 가공·판매 또는 관광농업 등을 연계한 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부대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농외소득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 셋째, 협업경영이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속성 있는 농업경영체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임. 가족농은 가족 내의 후계자 단절로 당대의 농업경영이 소멸되지만, 협업경영체는 조합원이나 사원 등의 신규 참여를 통해 농업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오늘날과 같이 경영주 독신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 경영주가 협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평생 직장과 노후 생활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

○ 다음으로 농업경영의 법인화는 협업경영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유리성을 갖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는 제도·정책적인 측면으로서 법인격을 획득하여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과 경영내부의 업무에 이점을 향유하게 됨. 또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세제, 사회보험제도, 융자제도 등에서 농정상의 혜택이 배려되고 있음.
- 둘째는 경영상의 유리성으로 법인경영의 인적 결합체적인 성격에서 비롯됨. 즉, 법인화를 통하여 구성원이 보유한 자본이 결합됨으로써 자본조달 능력이 증대되며, 또한 경영관리 능력이 결합되어 총체적으로 경영자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특히 법인화에 의하여 구성원 후계자의 참여조건이 정비됨으로써 유연한 경영 승계와 다양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함.
- 셋째로 농업경영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의식 개혁을 들 수 있음. 즉, 가족농의 연장선에서 법인화를 통한 경영자 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직장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농가와는 달리 농업에 대한 직업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음. 또한 대외적인 신용력이 제고되어 금융면이나 시장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넷째로, 법인 경영이 회사의 형태인 경우에는 인적 집단의 성격과 자본 집단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 원칙을 용이하게 추구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농업인에 한정되지 않고 비농업인도 포함시킬 수 있음. 더욱이 경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경영자 능력이나 노동력 및 기타 생산 요소의 추가적인 조달이 필요한데 이를 경영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유리성이 있음.

표 4-1. 개인경영과 협업경영의 성격 비교

구 분	개인경영	협 업 경 영	
		임 의 조 직	농 업 법 인
경영체 성격	단독 자연인	복수 자연인	복수 출자자의 법인
사업 계속성	사망으로 종결	구성원 해체로 소멸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책임 형태	무한책임	무한책임	무한 또는 유한책임
자금 조달	개인의 투자	구성원의 투자	구성원 출자, 차입금 등
토지 조달	상속, 구입, 차입	구성원의 제공	출자, 구입, 차입
의사 결정	경영주 단독	구성원의 합의	구성원, 사원의 합의
소유자 사망	상속 또는 파산	생존하는 구성원에 매각	지분은 유산 상속으로 보전

1.2. 마을공동사업체 법인화의 의의[1]

○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농업법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적으로 또는 회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인화의 유리성이 존재함.

- 사업자 거래 시의 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아울러 법인화가 필요함.
- 법인화를 통해 국고 보조사업의 운영에 따른 투명한 회계 처리와 사업

[1] 마을공동사업체 법인화의 필요성, 준비사항, 제도적 개선 등에 대해서는 김태용 회계사의 강의자료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개인경영보다는 조직체인 법인경영의 경우에 다양한 인재의 영입과 전문경영 체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음.

○ 마을공동사업의 법인화에 적합한 법인 형태는 영리 목적의 회사법인보다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함.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로서 마을공동사업의 취지에도 부합
- 정부의 농촌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이므로 특혜시비의 염려가 적은 공동조직체로서 영농조합법인 형태가 유리함.
-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조합원 수가 많으면 세금을 덜 납부할 수도 있음.(일반 조합원 포함하여 1인당 1,200만 원까지 면제)
  *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에 조합원 수익으로 전환하면 면세 혜택이 부여됨.
- 영농조합법인은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됨.

○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도 회사경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1인 1표이지만, 출자지분에 의한 의결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관에 명시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 구성에서 일정경작면적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출자금을 평준화함으로써 1인 1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출자금액에 비례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이 출자하여 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자회사 출자는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됨.

- 영농조합법인의 감사 기능(회계감사, 업무감사)을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그 밖에 농촌관광사업 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짐.
-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하여 조합원 수익으로 전환할 경우에 면세 혜택이 주어짐.
- 식품위생법상 특례로서 농어촌체험·휴양을 통한 음식제공이나 가공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함.

1.3. 마을공동사업체 법인화의 유의사항

○ 마을공동사업의 성격과 경영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법인 형태의 선택이 필요함.
- 의사결정의 신속성, 외부자본의 조달 등이 필요한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함.
- 협업경영체로서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함.

○ 농업법인 설립 시의 필수적인 정관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법인 정관예를 참고하여 신축성 있게 작성
- 조합원(출자자)들의 이용고 배당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
- 자금 집행에 대한 전결규정 및 회계처리 규정 마련
- 직원에 대한 인사, 급여, 복리후생, 퇴직금 규정 등을 비롯하여 각종 경비처리 및 경조사비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조합원 총회에서 규정을 의결함으로써 공지 효력을 가짐.

○ 법인경영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가 필요함.
- 법인의 회계장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현지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판매 실적 및 경영실적에 대한 분기별 실적의 공시
- 법인 경영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회 또는 보고회 개최

○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함.
- 출자자 및 참여자에 대한 이익 배분의 명확화
- 마을공동시설의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확화 및 사업의 주체가 다른 경우에 공통경비의 부담을 사전에 정할 필요
- 무상 지원을 받은 자산은 배당 대상이 아니며,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마을 자산으로 귀속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공동시설을 지자체 소속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효과적임.

2.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1. 마을공동사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의 관계 정립

○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사업체는 임의조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영농조합법인으로 성립하는 사례가 많으나, 본래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의 취지나 목적과는 크게 다르므로 개념 정립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의 규모화가 주된 목적이지만,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의 공동사업 및 공동재산 관리 또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으로 목적이 다양하며, 공동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농업경영과는 거리가 먼 실정임. 특히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갖는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영농조합법인과는 성격이 매우 다름.
- 지역 범위나 구성원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중심으로 한정된 지역을 사업 범위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마을 단위부터 시·군 단위까지 지역적으로 분포하고 구성원도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포괄함. 따라서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조직체로서의 결집력이 결정됨.

표 4-2.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격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어촌공동체회사	
		공동사업체	사회적기업체
조직체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체	지역단위 공동사업체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	농업경영의 규모화	지역의 공동사업, 공동재산 관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담당
사업 내용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수출 등	도농교류, 지역개발, 농식품가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복지서비스
지역 범위	지역 제한은 없으나 대체로 읍·면 내	마을 단위, 읍·면 단위, 시·군 단위	대체로 시·군 단위 이상
구성원	농업인 중심	마을 주민 중심 (농업인 포함)	특별한 제한 없음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 주민의 일부인 조합원의 이익 추구	지역 주민과 긴밀한 협력 관계	지역 주민 및 그 이상 협력 관계

○ 따라서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 형태는 영리 목적의 회사법인보다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합법인이 바람직하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로서 마을공동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함. 다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성격이므로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체, 예를 들어 '(가칭)농어촌공동사업조합'의 형태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2.2. 기존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

○ 마을공동사업체를 농업법인 제도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사업에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신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은 본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으로 구상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유통·가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관광과 농외소득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도 증가하고 있음.

○ 농촌체험 활동, 휴양시설 운영, 음식 판매 등의 마을공동사업을 농업법인의 사업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법인의 사업으로 주말농원,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지역농산물 조리·음식 판매 등의 소득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관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서 규정함이 바람직함.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시행령 제11조):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업법인의 부대사업(시행령 제19조):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마을공동사업체를 농업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외부자본과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출자 및 경영참여의 제한을 완화해 나가야 함.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외에 비농업인 및 기업이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함.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청산시 농지처분 등의 규정 보완
- 전문경영인의 농업법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대표이사, 집행임원의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출자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이 인정되어 외부자본 유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준조합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출자자 및 경영진의 권리 문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에 포함된 조합원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자자의 권리 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예: 농업협동조합법의 준용)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세제 개선이 필요함.
-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농촌체험장 등의 건축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
- 농업생산과 관련된 체험은 농산물 판매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함. 농산물 판매는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체험관광으로 관광서비스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함.

2.3.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 보완

○ 마을공동사업체가 주체가 되는 정부지원 사업자의 선정에 농업법인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마을공동사업체인 농업법인은 지속성을 가진 경영체로서 정책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음.
- 현재 농촌마을의 공동사업으로 농어촌체험관광, 특산품개발, 식품가공, 전통공예, 도농교류, 마을축제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중에서 이익의 3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 수혜자 등 외부인사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 등은 적용 여하에 따라서는 강한 제약이 될 수 있음.
-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사업체는 도농교류 활동이나 농촌체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이나 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적복지에도 기여하는 것임.

○ 마을공동사업체를 비롯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함.

-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언론 매체의 참여와 홍보가 필요함.
-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 경영컨설팅, 리더 및 참여자 교육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민·관·연이 연계하여 민간위탁 방식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부 록 1

농업법인 관련 법률(발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 5.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와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와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12조 (직접지불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 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

②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상법」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상업등기법」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수산업법」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생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 8,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과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중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경영 형태 또는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제1호 중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또는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

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1. 농업소득: 농업경영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합한 소득
2. 기준소득: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5년 동안의 농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소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의 해당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농업경영체에 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의 점수(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어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6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

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1774호,2009.10.8> 생략

부 록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조세특례 제한법상 최저한세	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0%)까지만 가능.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로 인하한다. 다만,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금액은 기존과 같이 15%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및묘목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음)	
농업 소득세 ('10.1.1부터 폐지)	<종전, 지방세법 부칙에 5년간 부과 유예>(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유예된 농업소득세를 2010.1.1부터 완전 폐지 ※ <종전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 폐지(시행: 2010.1.1/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임.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단, 3년 내 출자지분을 양도 시 세액을 추징함.(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배당소득세 면제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 면제 ◇기타 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 원 면제, 12백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 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좌 동 ◇기타 농업외소득 14% 분리과세 (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1항3호)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과세	좌 동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	좌 동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 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좌 동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법 266조제7항)	◇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 ○ 감면 세부내용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주)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감면액의 20%)가 비과세	좌 동
설립등록세 면제 (상동)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 (주)유상증자 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좌 동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좌 동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4조제2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및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좌 동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원원분 면제 제267조제3항)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전의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좌 동

참고 문헌

김수석 외,『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김재현,『농산촌활성화 사례조사 및 성공요인 분석연구』, (사)생명의숲, 2007.

김정호,『농업법인은 한국 농업의 활로』, 도서출판 목근통, 2008.7.

김태용,「농업법인 및 기업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무 및 제도개선안」(미발간자료), 2009.

농림수산식품부,『2010년 업무계획』, 2010.

농림수산식품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0.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2010.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연감 2010』, 2010.

박용규 외,『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2009.9.

염돈민,『지역공동체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정책브리프 제81호, 강원발전연구원, 2010.10.

오내원 외,『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지역재단,『'농어촌공동체회사'와 순환공생의 지역만들기 - 현황과 과제』, 제15차 지역리더포럼, 2010.10.

행정안전부,『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지원계획(안)』, 2010.6.

호소우치 노부타카 편저, 박해연 외 옮김,『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희망제작소, 2007.

田代洋一,『集落營農と農業生産法人: 農の協同を紡ぐ』, 筑波書房, 2006.

品川優,『條件不利地域農業-日本と韓國』, 筑波書房, 2010.

www.socialenterprise.org.uk.

정책연구보고 P135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2. 15.
발 행 2010. 12. 15.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dongyt@chol.com

ISBN: 978-89-6013-204-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